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10.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1호로 2019년 10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되고 조례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운영 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센터운영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사무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에 관한 내용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내용 추가(안 제5조~제9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목적(안 제1조)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안 제3조)
-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센터 사업 (안 제4조)
- 센터의 운영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평가 관련한 자문 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9조)
- 감염병 환자, 음주 등으로 시설물 훼손 우려자 등에 대한 센터 이용제한(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8. 29. ~ 9. 1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16.05.29.공포, '17.05.30. 시행)]을 반영하고 행정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현행 조례 명칭과 제3조에서는 센터 명칭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직무수행으로 알게되는 정신질환자 등의 기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운영 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점 등을 반영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행정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

- 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15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